

목 차

정 정 신 고 (보 고)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7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8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8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8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8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8
가. 권유기간	8
나. 피권유자의 범위	9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0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10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10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10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10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11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11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11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11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1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2
□ 정관의 변경	12

정정신고(보고)

2025년 07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7.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총 소집공고일	-	일정 변경	2025년 7월 03일	2025년 7월 16일
주주총회일	-	일정 변경	2025년 7월 18일	2025년 8월 01일
권유시작일	-	일정 변경	2025년 7월 08일	2025년 7월 21일
권유종료일	-	일정 변경	2025년 7월 17일	2025년 7월 31일
위임장 접수기간	-	일정 변경	2025년 07월 08일 ~ 07월 17일주주 총회 개최 전	2025년 07월 21일 ~ 07월 31일주주 총회 개최 전
Ⅲ.주주총회 목적사 항별 기재사항	-	주주총회 부의 안 건 변경	주1-1)	주1-2)

주1-1)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취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u>신주발행 금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u>신주발행 금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u>신주발행 금액이 일천억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취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긴급한 자금조달
--	--	-----------------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부칙 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u>07월 18일</u>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2)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취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u>액면총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u>액면총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6. <u>액면총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취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	---	-----------------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부칙 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시행일)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은 <u>2025. 8.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u> 제5조(신주 배정 한도) <u>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신주배정 한도 산정 시, 개정 전 정관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수는 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본 정관 개정 이후 발행되는 신주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위 한도를 계산한다.</u>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7월 16일

권 유 자:	성 명: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0 전화번호: 02-489-3611
작 성 자:	성 명: 임승희 부서 및 직위: 관리부 전무이사 전화번호: 02-489-361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5년 07월 16일	라. 주주총회일	2025년 08월 01일
마. 권유 시작일	2025년 07월 2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보통주	683,333	8.64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멜빈에프앤비	최대주주	보통주	1,576,556	19.93	최대주주	-
계		-	1,576,556	19.9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임승희	보통주	0	등기임원	등기임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 606호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2052-111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5년 07월 16일	2025년 07월 21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08월 0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5년 06월 23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국유니온제약(주)	https://ukp.co.kr	홈페이지 內, [고객]-[공지사항] 메뉴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게시글의 첨부 참조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보내실 곳

- 우편 및 현장 접수처: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0 삼환하이팩스 A동 417호, 한국유니온제약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2-489-3611

■ 위임장 접수기간 : 2025년 07월 21일 ~ 07월 31일 주주총회 개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5년 08월 01일 오전 9시
장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0 (주)호텔인터불고 아테나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대리 행사할 경우,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취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u>액면총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u>액면총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6. <u>액면총액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취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
--	---	-----------------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부칙 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시행일)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은 <u>2025. 8.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u> 제5조(신주 배정 한도) 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신주배정 한도 산정 시, 개정 전 정관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수는 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본 정관 개정 이후 발행되는 신주만을 기준으로 새롭게 위 한도를 계산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